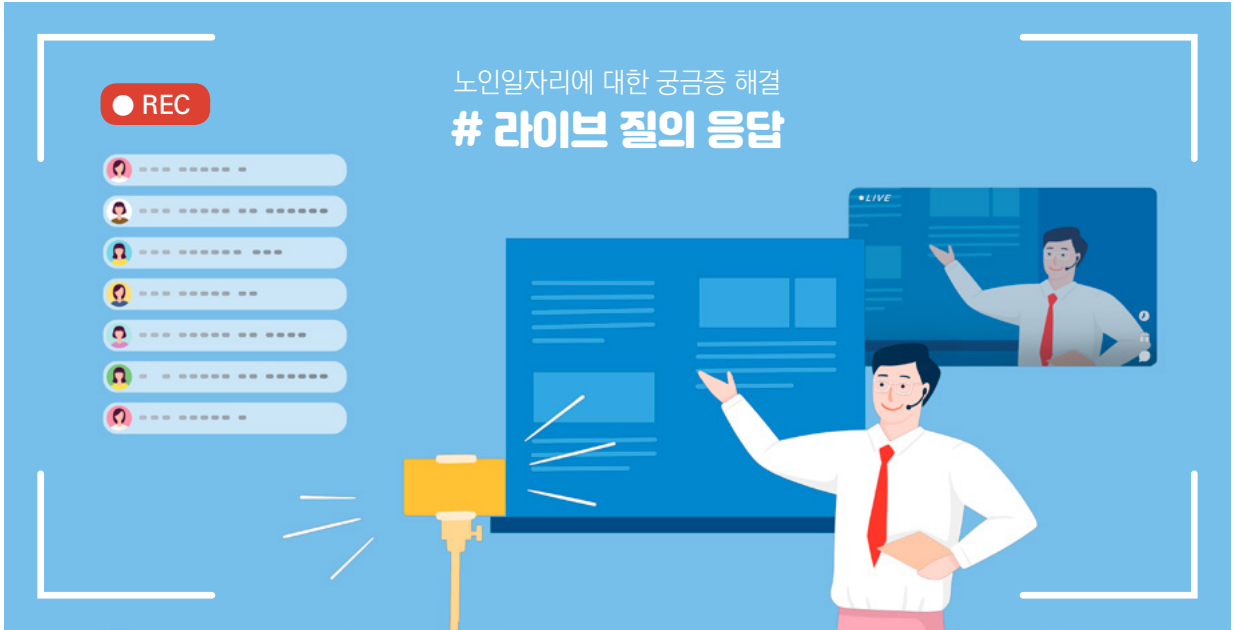


2020. NOV
VOL. 2

현장이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영지원 PAPER



현장이슈+ 경영지원 페이퍼는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시스템의 경영관리 상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키워드를 발굴·분석하여,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호 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 대체근로의 의미와 사례별 행정처리 방법
2. (회계세무) 2020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경영지원 페이퍼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라이브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슈페이퍼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업무지원시스템의 경영관리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경영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업단은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방법 : <http://naver.me/FxzTSqwA> (URL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세요.)

신청기간 : ~12월 1일까지



[라이브 질의응답]

일자 : 2020년 12월 03일 **시간** : 14시~ (자세한 사항은 사전 신청을 통해 남겨주신 개별 연락처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031-8076-34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인사노무 2회차

[노무법인 의연] 2020. 11월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수요처 사정 등으로 근무일자를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에 대한 법률적 용어와 행정처리 유의사항 안내

0 개념정리

[대체근로] 통상근로일(참여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

※ 유사 실무용어 :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무(대휴), 대체근로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참여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1 요약

-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적어도 24시간 전)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원래의 휴일과 통상 근로일의 이른바 1:1 대체(대체근로)가 가능함
- 일 소정근로시간을 다른 소정근로일에 임의 분배하여 초과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거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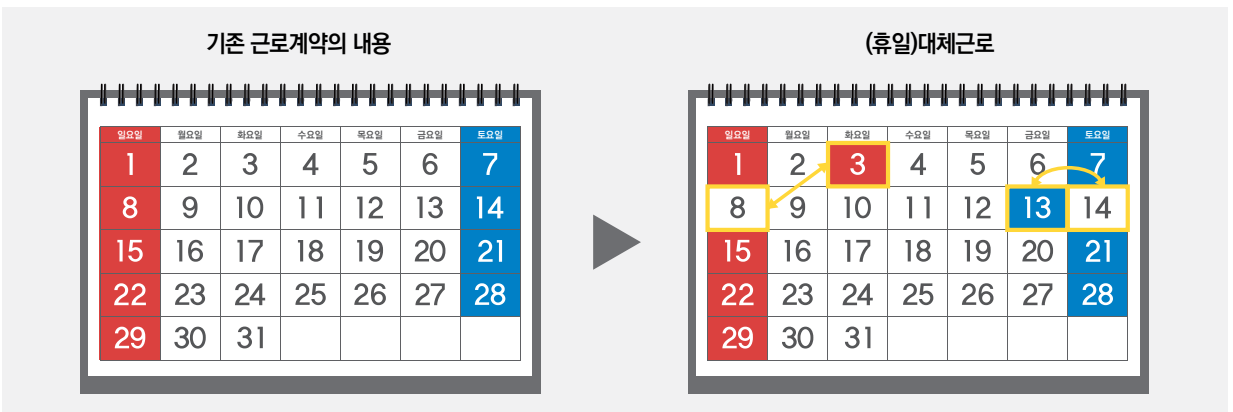
2 현황

-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에서 사업(일시)중단, 수요처 사정(예. 방학 등) 등의 사유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일·휴일 및 근로시간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적인 변경 없이 이와 같은 운영방식을 '대체근로(근무)'로 간주하고 사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혹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3 대체근로의 의미(법률적 해석)

-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대체근로’에 대하여는 ①파업 등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었을 때 ②중단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③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¹⁾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휴일 및 근로시간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휴일)대체근로’를 의미하고, 이는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나 판례와 행정 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음
 - ‘(휴일)대체근로’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음”²⁾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즉, ①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②사전에(적어도 24시간 전)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유효한 휴일대체로서 원래의 휴일과 통상 근로일의 이른바 1:1 대체가 가능함³⁾

4 (예시1)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의 처리



[근로일·휴일]

- 소정근로일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휴무일 : 토요일
- 주휴일 : 일요일

[(휴일)대체근로동의]

- 당초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체근로 함
- 통상 근로일 3일과 주휴일인 8일을 대체하여 각 3시간 근무
- 통상 근로일 13일과 휴무일인 14일을 대체하여 각 3시간 근무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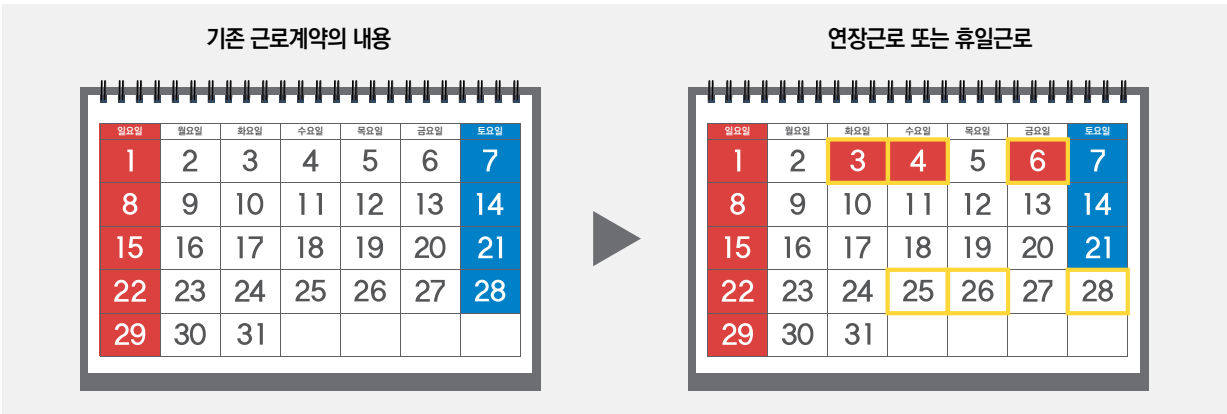
[효과 : "1:1"대체]

- 유효한 대체 시 3일, 13일은 주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므로 근무하지 않고, 8일, 14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임금만 지급

- 본래적 의미의 (휴일)근로대체로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로일과 휴일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활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3) 근기 68207-806, 1994. 5. 16. 참고

5 (예시) 근로계약 변경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의 처리



[근로일 · 휴일]

- 소정근로일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휴무일 : 토요일
- 주휴일 : 일요일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 당초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추가근무 함
- 통상 근로일 3일, 4일, 6일 각 3시간(결근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함
- 통상 근로일 25일, 26일 각 3시간 초과하여 근무
- 휴무일인 28일 3시간 근무

[효과 : "1+1.5" 추가]

- 통상 근로일 25일, 26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 휴무일인 28일에 1일 3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예컨대, 수요처 사정 등으로 마지막 주 3일(25일, 26일, 27일)을 근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각 3시간씩 총 9시간을 첫째 주 3일(3일, 4일, 6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도 동일함
- 유효하게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6 적용하기 (기초상담 내용 각색)

- Q.** 저희 기관은 주5일 일3시간 근무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 6시간 근무할 때,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 A.**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대체근로가 아니라 "기존 1일 3시간에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추가로 3시간 더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가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변경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추가로 3시간 더 근무하는 것은 더 이상 연장근로가 아니고 변경된 1일 근무시간인 6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h	3 3h +3h	4 3h +3h	5 3h +3h	6 3h	7
8	9 3h	10 3h	11 3h	12 3h	13 3h	14
15	16 3h	17 3h	18 3h	19 3h	20 3h	21
22	23 3h	24 3h	25 3h	26 3h	27 3h	28
29	30 3h	31 3h				

- Q. 사회서비스형 주 3일 3시간 근무 활동자가 어린이집 방학으로 2일은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날 1시간씩 추가(6시간 근무를 6일에 걸쳐 1일 1시간씩 추가근무)로 근무하여 총 근무시간을 맞추어도 되나요?
- A. 방학으로 근무하지 못한 2일의 근로시간을(3시간+3시간)을 다른 근로일에 배분하면 1시간씩 추가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총 근무시간(산정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일의 공백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것이고, 총 근무시간과 별개로 연장 근로시간이 6시간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대체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입니다. 대체근로는 근로일이었으나 수요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2일을 휴일로 하고 원래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h	3 -	4 3h	5 -	6 3h	7
8	9 3h	10 -	11 3h	12 -	13 3h	14
15	16 3h	17 -	18 3h	19 -	20 3h	21
22	23 3h	24 -	25 3h	26 -	27 3h	28
29	30 3h	31 -				

연장근로_2일 근무 보완X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h 방학	3 -	4 3h 방학	5 -	6 3h	7
8	9 3h +1h	10 -	11 3h +1h	12 -	13 3h +1h	14
15	16 3h	17 -	18 3h	19 -	20 3h	21
22	23 3h +1h	24 -	25 3h +1h	26 -	27 3h +1h	28
29	30 3h	31 -				

대체근로_2일 근무 보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 방학	3 -	4 - 방학	5 -	6 3h	7
8	9 3h	10 -	11 3h	12 -	13 3h	14
15	16 3h	17 3h	18 3h	19 3h	20 3h	21
22	23 3h	24 -	25 3h	26 -	27 3h	28
29	30 3h	31 -				

구분	[3h+1h] 연장근로 형태로 일하게 된다면?	[3h↔-] 대체근로 형태로 일하게 된다면?
일 급여 산출방법	(3h*시급) + (1h*시급*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	3h*시급
예시 (시급1만원)	(3h*시급 1만원)+(1h*1만원*1.5배) = 일 45,000원	3h*시급 1만원 = 일 30,000원

제2장 세무회계 2회차

[회계법인 조은] 2020. 11월

정부가 2020년 7월 22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비를 하기 위하여 간단한 핵심 사항만 정리하여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 ※근로장려세제, 부가가치세 등 세부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안내 예정

1 들어가기

2020년 세법개정안이 7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영세 사업자 세 부담 완화

-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 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0.5%) 신설
 -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 (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 ②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 근로장려금을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이 대신 신청 가능

-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 상반기 소득분 : 12. 15일, 하반기 소득분 : 6. 15일

